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직무와 권한)

1.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 ① 내부감사부서 및 외부감사인
 - ② 내부고발제도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 운영여부
 - ③ 내부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 유지 여부
 - ④ 기타 감사위원회의 관련 정책, 절차 및 보고
3.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하여 결의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6. 제 5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6 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2 장 구성

제 4 조 (구성)

1.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조의 11 제 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 542조의 11 제 2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5. 기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다.

제 5 조 (위원장)

1. 위원회는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3.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의

제 6 조 (종류)

1.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2. 정기위원회는 분기마다 1 회 개최한다. 단, 부의사항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아니한다.
3.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7 조 (소집권자)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 조 제 3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소집 절차)

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 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9 조 (결의 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부의 사항)

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①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②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①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
- ②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③ 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 ④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⑤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① 업무, 재산 조사
- ② 자회사의 조사
- ③ 이사의 보고 수령
- ④ 이사와 회사간의 소 대표
- ⑤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⑥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제청 승인
- ⑦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⑧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 처리 등에 관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 ⑨ 감사 계획 및 결과
- ⑩ 중요한 회계 처리 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⑪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 ⑫ 외부감사인의 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
- ⑬ 감사결과 시정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⑭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제 11 조 (관계인의 출석 등)

1.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의사록)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3 조 (간사)

1. 위원회는 간사를 두고 인사팀장이 이에 임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제 4 장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

제 14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1.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한다.
2.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 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3. 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는 때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보수 및 감사 시간에 관하여 회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 15 조 (외부감사인의 변경)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어 외부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2 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 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기타 외부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 16 조 (외부감사인의 해임)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 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1.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외부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외부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 결과 외부감사인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 17 조 (전기 외부감사인의 의견 진술권)

1. 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행한 외부감사인(이하 “전기 외부감사인”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거나 제 16 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인 해임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 외부감사인 및 해임되는 외부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회사는 전 항의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1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외부감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술한 의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 19 조 (의견 교환)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5 장 보칙

제 20 조 (감사록의 작성)

1.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1 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6.03.11 부터 시행한다.